

청주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71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현중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5. 26.자 매매계약은 5,902,4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5,902,423원 및 그 중 2,895,643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902,423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2,423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 2015. 5. 18.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19. 12. 2.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이하 편의상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0. 4. 6. “C는 원고에게 4,057,970원 및 그 중 2,895,643원에 대해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91975호)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21. 12. 10. 기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5,902,423원(원금은 그 중 2,895,643원)이다.

다. C는 2020. 5. 26.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0. 6. 2. 접수 제107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110,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가 E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020. 6. 3.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2020. 6. 18. F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가 자기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에 대한 채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의 부모가 경매에 의해 위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에,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협의된 채권액을 채권자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여 C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었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관계악화를 이유로 C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9. 9.경 감정평가액 170,389,000원보다도 상당히 적은 점, 피고는 C의 누나이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C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8.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원리금은 5,902,423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5,902,4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사해행위 후 F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902,423원 및 그 중 원금 2,895,643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895,643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구하나, 이자와 가지급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